

선	기관외 장
람	



제34호(호외) 2022. 9. 13.(화)

공 고

광양시 공고 제2022-1768호 「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」 입법예고 1
 광양시 공고 제2022-1777호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7

회										
람										

▶ 발행 : 광양시 ▶ 편집 : 홍보소통실 (☎797-2323, 행정2713)

「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」 입법예고

「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8일

광 양 시 장

1. 조 례 명 :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

2. 개정이유

-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자립화를 위한 축제 유료화 등의 수익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

3. 주요내용

- 축제 자립화 조항 신설(제조)
- 축제 입장료 부과등 다양한 수익사업 가능, 시장 허가필요(제조)
-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
-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축제에 관련된 사업에만 사용
-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지역사업장 이용권 또는 기념품 지급 가능
- 수익사업의 경우 광양시민에게 할인 및 무료운영 가능

4. 입법예고기간 : 2022. 9. 8. ~ 2022. 9. 28.(20일간)

5. 의견 제출

-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 (참조 : 관광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연락처

다. 의견 제출 방법: 직접방문(서면), 팩스, 전자우편

라. 의견 제출할 곳

- 주 소: 전남 광양시 행정2길5 관광과(우편번호: 57785)

- 전 화: 061-797-2721

- 팩 스: 061-797-4187(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)

- 전자우편: seho3849@korea.kr

※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

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광양시 축제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3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끝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 례 명 : 광양시 축제발전 및 운영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 건	비 고
	찬 성	반 대		

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축제의 자립화) ① 추진위원회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추진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단체의 정관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권, 기념품 판매, 광고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추진위원회는 축제 수입금 관리를 전산화 등을 통해 자동화하고 각종 서류·장부 등의 비치를 통해 정확성과 능률성, 투명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,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추진위원회는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시장과 협의하여 축제 개최 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 수익금의 일부는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역 사업장 이용권 및 기념품으로 지급 할 수 있다.

⑤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축제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원금과 소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시와 추진위원회간 협의하여 처리한다

⑥ 축제기간 중 주차장요금은 기존 조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⑦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경우 광양시민에게 할인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, 해당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1조의2(축제의 자립화) ① <u>추진위원회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</u> ② <u>추진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단체의 정관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권, 기념품 판매, 광고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u> ③ <u>추진위원회는 축제 수입금 관리를 전산화 등을 통해 자동화하고 각종 서류,장부 등의 비치 등을 통해 정확성과 능률성, 투명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,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.</u> ④ <u>추진위원회는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시장과 협의하여 축제 개최 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 수익금의</u>

일부는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역 사업장 이용권 및 기념품으로 지급 할 수 있다.

⑤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축제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원금과 소요 경비 등을 고려하여 시와 추진 위원회간 협의하여 처리한다

⑥ 축제기간 중 주차장요금은 기존 조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⑦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경우 광양시민에게 할인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, 해당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

『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』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9. 8.

광 양 시 장

1. 조 례 명 : 『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』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“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” 이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로 확정됨에 따라,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업무를 추진
-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한 문화시설 위탁관리 내용에 “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”는 내용을 포함 시킴으로써 경쟁제한적 지자체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제19조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제2항을 신설함.

②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.

4. 예산상황 : 해당없음

5. 입법예고기간 : 2022. 9. 8. ~ 9. 28.(20일 이상)

6. 개정안 : 별 첨

7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. 9.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(참조: 문화예술과 전화 061-797-2227, FAX 061-797-4184, lwyquf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 례 명 : 『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 여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

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위탁관리) ① (생략)	제19조(위탁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②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.</u>
<u>②</u> (생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